

학

칙

2020년 8월 24일(개정)

수 원 과 학 대 학 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검소·정의·창의의 교훈으로 자아계발과 문화시민의 자질 및 미래사회의 선도능력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수원과학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수업 연한	학과/계열	입 학 정 원			수업 연한	학과/계열	입 학 정 원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4년제	간호학과	93	-	93	2년제	토목안전과	60	-	60
3년제	건축과	80	-	80		환경산업과	40	-	40
	실내건축디자인과	100	-	100		생활체육과	40	-	40
	공연연기과	50	-	50		유통경영과	60	-	60
	치위생과	80	-	80		금융경영과	40	-	40
	임상병리과	40	-	40		뷰티코디네이션과	74	-	74
	산업디자인과	50	-	50		사회복지과	110	-	110
	건축기계설비과	100	-	100		항공관광과	200	-	200
2년제	컴퓨터정보과	80	-	80		세무회계정보과	110	-	110
	기계과	120	-	120		호텔관광서비스과	120	-	120
	자동차과	120	-	120		비서행정과	80	-	80
	신소재과	70	-	70		호텔조리제과제빵과	80	-	80
	전기과	120	-	120		아동보육과	100	-	100
	전자과	120	-	120		글로벌한식조리과	40	-	40
	정보통신과	100	-	100		합 계	2,557	-	2,557
	산업경영과	80	-	80					

제4조의 2(계약·협약에 의한 학과설치) ①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협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협약 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교육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3(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수업연한	학과명	입 학 정 원		
		주 간	야 간	계
1년제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0	-	20
2년제	사회복지학과	-	20	20
	글로벌한식조리학과	20	-	20
	항공관광학과	20	-	20
	합 계	60	20	80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로 한다. 다만,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자(이하 “조기졸업자”라 한다)에 졸업연한은 2년제는 3학기, 3년제는 5학기, 4년제는 7학기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① - 삭제-
- ② - 삭제 -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단,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학기제,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 30주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제24조에 따라 1학점 15시간 이상의 수업은 하여야 한다.
- ④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시 대학운영 및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정공휴일
- 2. 일요일
- 3. 개교기념일
-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휴업일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2. 고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 3. 전문학사 이상 졸업·수료(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 신 입학자는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 성적)과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 1. 대학수학능력시험
- 2. 면접고사
- 3. 실기고사
-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③ - 삭 제 -

제14조의 2(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4(대학입학전형의선행학습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5조의 2(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취소를 한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모집요강에 의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 자

제16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 2(전과)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2년제의 경우 제 1학년 2학기, 제 2학년 1학기, 3년제의 경우 제 1학년 2학기, 제 2학년 1학기, 2학기, 제 3학년 1학기의 수업일수 1/4 이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입학정원의 20%(전출 및 전입학과 기준) 범위 내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 삭제 -

⑤ 기타 전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 3(재입학) ① 미등록 제적·미복학 제적·유급제적·자퇴·퇴학·기타 사유로 제적(이하 "제적"이라 한다)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 삭제 -

③ - 삭제 -

④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이 있는 자로서,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

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 명의로는 지원이 가능하며,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공적 증명서(농지원부나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공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4대 보험 미가입 영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하다.

③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 가사, 질병, 병역의무, 출산(임신 포함), 육아,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일반휴학원서, 휴학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 삭 제 -

③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출산(임신 포함)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단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⑤ 장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제3항의 2배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신입생은 1학년 1학기 중 입영휴학 및 질병, 출산(임신포함), 육아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총장의 재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제19조의 2(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사유해소 후 복학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② 복학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업체위탁생 및 군위탁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입학당시와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만 복학할 수 있다.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 자퇴사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의 1/4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 삭 제 -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 제32조에 해당하는 자로 동일 학년 2회 유급된 자(간호학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만 적용)

제 6 장 교 과 및 수 업

-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하고, 실험실습은 학과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개설한다.
- ② 전공교과는 필수와 일반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 삭 제 -
- ④ 산업체 위탁생을 위한 별도 학습의 교육과정은 위탁산업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⑤ 입학 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 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 제22조의 2(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의 3(공학기술교육인증 교육과정)** ① 공학계열의 각 학과는 공학기술교육인증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학기술교육인증을 받은 학과(공학기술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를 포함한다)의 기술전문학사 학위 과정에 필수적인 교과영역과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MSC(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 최소 10학점으로 한다. 수학, 기초과학 영역은 각 1개 교과목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 영역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
 2. 공학인증주제(전공) :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54학점으로 한다.
 3. 전문교양 : 최소 6학점으로 한다.
- ③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센터를 둘 수 있다.

- 제22조의 4(현장중심의 교육과정)**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체 요구수준과 학위수준을 충족하는 교육품질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 교육과정 또는 대학의 핵심역량과 학과의 전공역량을 반영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의 1(비정규 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23조의 2(평생교육원)** ① 본 대학에는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에는 신규미취업자, 실직자에게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취업전직교육과정 및

고용촉진훈련과정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 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 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입학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③ 수업연한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2년제 학과 : 2년 이상
 - 3년제 학과 : 1년 이상
- ④ 전문대학 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72학점 이내,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08학점 이내로 한다.
- ⑤ 매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둔다.
- ⑦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4(학점은행제) 본 대학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5(시간제등록제) ① 본 대학에 시간제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③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통합반과 별도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시간제 등록의 선발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 시간제 등록생의 교육과정은 본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제23조의 6(융합전공) 재학생에게 다양한 전공체험 및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수 전공으로 모집단위 전공 외에 융합전공을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년제	이수구분	졸업 기준 학점		
			2018학년도 입학자 까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자 부터	2021학년도 전기 졸업자 부터
일반 과정	2	교양	8	6	8
		전공	56	50	50
		총 학점	80	72	72
	3	교양	14	10	12
		전공	96	86	86
		총 학점	120	108	108
	4	교양	25	25	25
		전공	106	90	90
		총 학점	135	130	130

구분	학년제	졸업 기준 학점	
		2018학년도 입학자 까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자 부터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1	24	24
	2	60	60
	총 학점	140(전적대학교 합산)	132(전적대학교 합산)

③ 수강신청 가능한 최대, 최소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비 고
수강 신청	최소	15	1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수강신청 최대/최소에 제 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최대	24	20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0학년도부터(전학년 적용)
계절학기 취득 가능 최대 학점	4

⑤ 현장실습학기제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의 2(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기간내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학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벗어나서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수강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24조의 3(장애학생 수강신청)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강좌에 한함)에게는 우선 수강신청을 허가하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한다.

② 기타 장애학생 지원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 창업 및 인턴십, 사회봉사활동, 집중수업, 이동수업, 경력개발학점제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매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주간 및 야간 강좌의 수업 시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2(집중수업) ①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학기 수업은 제9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3(경력개발학점제 수업) 학생의 경력개발과 진로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고, 도전의식 고취와 창의융합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융합 경력개발학점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중 1/4 초과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④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직무능력평가1, 직무능력평가2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 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	100 ~ 95	4.5	
A ⁰	94 ~ 90	4.0	
B ⁺	89 ~ 85	3.5	
B ⁰	84 ~ 80	3.0	
C ⁺	79 ~ 75	2.5	
C ⁰	74 ~ 70	2.0	
D ⁺	69 ~ 65	1.5	
D ⁰	64 ~ 60	1.0	
F	59 이하	미취득	
P		불 계	

③ - 삭제 -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7조의 1(특별학점 취득) ① 본 대학의 신입생은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특별교육과정 및 특별시험을 거쳐 4학점 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에 입학할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 이수성적은 입학한 첫 학기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24조 3항의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8조(진급인원) 2학년, 3학년 및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성적의 취소)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은 취소한다.

제30조(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2-1호 또는 별지 2-3호 및 별지 2-2호 또는 별지 2-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다음의 수료학점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3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구 분	2·3년제 학과	4년제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학년 수료	3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년제 학과)
			24학점 이상 (1년제 학과)
2학년 수료	72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3학년 수료	108학점 이상	95학점 이상	-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1996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 삭제 -

제31조의 2(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및 절차)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본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에서 65학점(3년제), 48학점(2년제) 이상을 이수한 자, 다른 전공 전문학사의 경우 42학점(3년제), 36학점(2년제)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본교 총장 명의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 절차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별표 1, 학위증은 별지 2-5와 같다.

③ - 삭 제 -

제31조의 3(조기졸업) 2년제는 3학기, 3년제는 5학기, 4년제는 7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의 4(전문학사 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학사 학위수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졸업한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의 5(복수학위) 본 대학과 국외대학간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양교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의 6 - 삭 제 -

제31조의 7 - 삭 제 -

제31조의 8 - 삭 제 -

제31조의 9 - 삭 제 -

제31조의 10(졸업유예제) 졸업유예제라 함은 학칙 제31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의 11(학점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방학 기간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대학에서 일정 기간의 어학연수를 한 경우
7.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및 국내·외 인턴십을 수행한 경우
8. 본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기로 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유급)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에 유급 시킨다.

학과	유급 처리 기준		
	적용기준	적용범위	적용년도
간호학과	동일학년 2.0미만	전학년	2020학년도 부터
치위생과	동일학년 1.8미만	전학년	
임상병리과	동일학년 1.8미만	전학년	

제 8 장 학 생 활 동

- 제33조(학생회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③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준칙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생회 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학생회비는 학생복지과 관리 지도를 받아 대학 회계 집행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 후 잔여금은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복지위원회의 승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생 및 학생대상 활동의 금지) 학생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내, 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가입권유)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집단적 행위, 시위, 성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사용, 각종 영업행위,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 부착 및 전단지(인쇄물) 배부(홍보), 각종 안전 사고 및 인원침해유발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외부인이 교내(건물 내, 외)에 무단출입하여 각종 시설물사용, 개인정보수집, 인터넷 가입권유, 계약, 판매, 홍보, 게시물부착, 전단지(인쇄물) 배부, 기타 영업 관련 등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교직원이 적발하는 경우 신분 확인과 함께 즉시 퇴교 조치하며,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7조(학생지도) ① 지도교수는 학과장 재량으로 연속지도가 가능하도록 선임하며, 선임된 지도교수는 매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 또는 이에 상응(안전사고, 인권침해 등)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개별상담을 통한 특별지도를 실시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심리상담 등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생상담센터의 전문상담을 받도록 지도한다.
- ② 집단 활동을 주관하는 담당교수는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한다.
- ③ 학생회를 지도(지원)하기 위한 학생생활·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 1(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학생회, 동아리, 학과, 대학전체 등 학생활동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학생이 주가 되어 다음 각 호 1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대책, 행사주관 학생 및 담당교수 책임자 지정(연대책임 서명 포함)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각종 집단(개인)활동(O.T, M.T 등)
2. 교내, 외 광고, 인쇄물의 게시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단체)의 학내초청 및 행사(영업행위 제외)
5. 각종 안전사고 또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6. 기타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의 1(안전사고 및 인권침해의 예방) ① 각종 행사(O.T, M.T 등)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주관 책임자(교수·학생)는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대책 수립)과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등은 반드시 사전점검(교육부 제공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참조) 후 진행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등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외 동행할 수 없는 소규모 행사 등은 지도교수가 학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사에 관련된 사전교육(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실시하고, 관련부서 담당자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응급처치 요령 등과 구급에 필요한 비상약품 등을 지원 받도록 한다.

③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38조의 2(학생활동의 연대책임) ① 교내, 외 집단(개인)활동과 관련하여 행사(활동)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대책임 서명을 징구하고, 인권침해 사고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한다.

② ①항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행위자와 연대책임자(교수·학생)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며, 관련 집단 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제39조(간행물 간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 9 장 규 율 과 상 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학칙시행세칙 제32조에 따라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

고 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4주를 초과하여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 또는 사전 승인 없이 각종 행사(집회, M.T 등)를 주관(참여)한 자.
 5. 각종 안전사고 또는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
 6. 집단 활동을 주관하는 교수 및 학생 책임자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학생 상벌 내규 제4조(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교원의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생의 징계는 교무위원회 또는 학생생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10 장 등 록 금

제45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비등 제잡비는 자율적 경비로서 학생이 원할 경우 납부할 수 있다.
- ③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자는 제외)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正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9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5조의 3(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 예산 및 결산, 사학연금 법 인부담금, 추가경정 자금예산, 잉여금처리 등 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심의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 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등록금의 면제) 개인의 역량과 면학의지가 투철하거나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각종 선행, 봉사, 교외 수상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가 인정되는 자로 장학사정관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심의된 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감면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장 학 금

- 제47조(장학금)** ① 총장은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삭 제 -
 2. - 삭 제 -
- ②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장학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액 회수한다.

제 12 장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제 위원회

제48조(교무위원회 구성) 본 대학에 교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행정처·실장으로 하며, 그 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9조(교무위원회 소집 및 심의)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목표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의 2(대학평의위원회) ①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평의원 자격기준, 위원위촉 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의 3(제 위원회)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3 장 직 제

제50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 ②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시간 까지 가능하다.

④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2시간 까지 가능하다.

제51조(직제) ① 본 대학에 경영관리실, 산학협력처, 교학처, 국제협력처, 학생지원처, 총무처, 기획처 및 산학협력단과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경영관리실에 경영관리과를 두고,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과와 취·창업지원과,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두며, 교학처에 교무과, 학적과, 2부교학과를 두고, 학생지원처에 학생복지과,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를 두며, 총무처에 총무과, 경리과, 업무과, 관리과, 보건소를 두고, 기획처에 기획과, 평가과를 둔다.

③ 각 처(실)에 처(실)장을 보하며, 처(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부서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각 처(실)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의 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에 정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의 3(자체평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 속 기 관

제52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 | | |
|-----------|-----------------|
| 1. 입학관리본부 | 5. 도서관 |
| 2. 교육혁신원 | 6. 직장예비군대대 |
| 가. 역량교육센터 | 7. 정보전산원 |
| 나. 교수학습센터 | 8. 4차산업기술교육원 |
| 3. 미디어센터 | 가. 스마트팩토리기술인력센터 |
| 4. 국제협력센터 | 나.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 |

② 부속기관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 훈련 시간
4.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제52조의 2(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1. 산업기술연구소
2. 건설·환경연구소

② 부설연구소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 3(부설교육기관) ① 본 대학에 다음의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평생교육원

② 부설교육기관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5 장 보 칙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 삭제 -

② - 삭제 -

③ - 삭제 -

제55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절차) 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⑥ - 삭제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9.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수원공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도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단,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3.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1. 3. 1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3.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3. 11. 22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은 1984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 8. 18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6. 4.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6학년도 개시일 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7. 1. 31부터 시행한다.
2. (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 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졸 업 정 원	적 용 학 년 도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계 과	240		1986	
	200		1987	
기계설계과	240		1986	
	200		1987	
전 기 과	240		1986	
	200		1987	
공업경영과	160	1986	1987	

부 칙

1. (시 행 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자 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 4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 제1항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원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수원과학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단, 1997학년도 후기졸업자의 전문학사학위 증서발급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 받는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9학년도 학기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 변경 및 전공별 모집으로 인한 경과조치)

가. 전공코스 모집으로 인한 기계과, 기계설계과, 금형설계과, 자동화용접과, 열처리과, 전기과, 전자과, 정보통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계산

업공학부의 컴퓨터응용가공 전공·자동화기계 전공은 기계과 소속으로, CAD/CAM 전공·응용기계설계 전공은 기계설계과 소속으로, 프레스금형 전공·사출금형 전공은 금형설계과 소속으로 보고, 자동화산업 공학부의 자동화용접 전공·비파괴검사 전공은 자동화용접과 소속으로, 제품열처리 전공·금형열처리 전공은 열처리과 소속으로, 전기·전자통신 공학부의 전기설비 전공·전기기기 전공은 전기과 소속으로, 회로시스템설계 전공·전자제어 전공은 전자과 소속으로, 통신 전공·정보처리응용 전공은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본다.

나.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무자동화과, 건축장식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 정보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및 공업경영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자·통신공학부 및 산업시스템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기계산업공학부, 자동화산업공학부, 전자·통신공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중 기계산업공학부의 CAD/CAM기계설계 전공과 메카트로닉스 전공은 자동화기계설계과로, CAD/CAM금형설계 전공과 생산시스템 전공은 컴퓨터응용금형설계과로, 자동화산업공학부의 자동화용접 전공과 비파괴검사 전공은 자동화용접과로, 재료응용 전공과 자동화표면코팅 전공은 신소재응용과로, 전자·통신공학부의 정보전자 전공과 컴퓨터제어 전공은 전자과로, 통신전공과 네트워크전공은 정보통신과로, 전자계산과는 컴퓨터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자동화용접과, 전자과, 토목과, 산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동화시스템과, 디지털정보전자과, 토목환경시스템과, 디지털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건축설비과, 기계과, 자동화기계설계과, 토목환경시스템과, 환경공업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환경시스템과, 컴퓨터시스템기계과, 컴퓨터응용설계과, 건설시스템과, 환경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기계과, 자동화기계설계과, 토목환경시스템과, 환경공업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시스템기계과, 컴퓨터응용설계과, 건설시스템과, 환경정보과 소속으로 보며, 종전의 컴퓨터응용설계과, 컴퓨터응용금형설계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CAD그래픽스와, 하이테크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1조 제2항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제52조 제1항은 2006년 8월 3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컴퓨터시스템기계과, CAD그래픽스와, 자동화시스템과, 음악

과, 사회체육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계과, 자동차과, 일렉트로닉스패키징과, 음악계열(순수음악전공), 사회체육계열(사회체육전공) 소속으로 보며, 종전의 인터넷정보과, 하이테크디자인과, 일렉트로닉스패키징과, 디지털정보전자과, 산업시스템경영과, 환경정보과, 디지털산업디자인과, 사회체육계열(사회체육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경영정보과, 자동차과, 기계과, 전자과, 산업경영과, 환경보건과, 산업디자인과, 생활체육계열(생활체육전공) 소속으로 보며, 종전의 건축환경시스템과, 인터넷경영정보과, 방송연예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환경설비과, 컴퓨터정보과, 연기영상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의 1 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31조의 6 은 2007년 8월 1일부터, 제31조의 7 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본 대학이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제협력과 및 평생교육원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건축환경설비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설비소방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조치) 종전의 연기영상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공연연기과 소속으로 보며, 종전의 음악계열(순수음악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음악계열(뮤지컬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조치) 종전의 생활체육계열(무도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생활체육계열(스포츠재활전공) 소속으로 보며, 종전의 호텔조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조리·제빵계열(호텔조리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②항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4년제(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포함) 140학점) 과 제31조(졸업 및 수료) ②항 4. 4학년(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포함) 수료(140학점 이상)의 충족학점은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졸업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조치) 종전의 간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간호학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 3의 ⑤항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소급적으로 용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신소재응용과, 건설시스템과, 생활체육계열(스포츠재활전공), 생활체육계열(생활체육전공), 국제경영과, 증권금융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소재과, 토목과, 생활체육과, 유통경영계열(유통물류전공), 유통경영계열(금융경영전공)소속으로 보며, 종전의 건축설비소방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기계설비과 소속으로 보며, 음악계열(뮤지컬전공), 음악계열

(실용음악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전공이 유사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가. 종전의 환경보건과, 유통경영계열(유통물류전공), 유통경영계열(금융경영전공), 호텔조리·제빵계열(호텔조리전공), 호텔조리·제빵계열(제과제빵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년 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환경산업과, 유통경영과(유통물류전공), 유통경영과(금융경영전공), 호텔조리제과제빵과(호텔조리전공), 호텔조리제과제빵과(제과제빵전공) 소속으로 본다.
나. 종전의 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일본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년 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관광비즈니스과(관광마케팅전공), 관광비즈니스과(관광서비스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가. 종전의 토목과, 유통경영과(유통물류전공, 금융경영전공), 관광비즈니스과(관광서비스전공, 관광마케팅전공), 호텔조리제과제빵과(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토목안전과, 유통경영과, 금융경영과, 호텔관광서비스과, 호텔조리제과제빵과 소속으로 본다.
나. 종전의 관광비즈니스과(관광마케팅전공, 관광서비스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관광서비스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3)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학 과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정 원 섭

(별지2-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학 과 :
학 위 명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정 원 섭

학위등록번호 : 수원 - -

SUWON SCIENCE COLLEGE DIPLOMA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Division :

Degree Nam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required and is hereby awarded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from Suwon Science College.

President of the *Chung Won Sub*

Suwon Science College **Chung Won Sub**

Registration Number : SSC - -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학 과 :
학 위 명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정 원 섭

학위등록번호 : 수원 - -

SUWON SCIENCE COLLEGE BACHELOR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Division :

Degree Nam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required and is hereby awarded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from Suwon Science College.

President of the *Chung Won Sub*

Suwon Science College **Chung Won Sub**

Registration Number : SSC - -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총장

(별지1)

제 호

이 수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학 과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총장

정 원 섭

학 위 의 종 별

【별표 1】

일련 번호	종 별		해 당 학 과	비고
	국문	영문		
1	공 업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Applied Science	자동차과, 하이테크디자인과, 일렉트로닉스패키징과, 신소재 응용과, 신소재과, 전자과, 정보통신과, 컴퓨터정보과, 인터넷 경영정보과, 산업경영과, 건축과, 건설시스템과, 토목과, 토목 안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기계설비과, 환경보건과, 환경 산업과, 기계과, 전기과	
2	경 영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세무회계정보과, 증권금융과, 국제경영과, 유통경영계열(금 용경영전공, 유통물류전공), 유통경영과(금융경영전공, 유통 물류전공), 유통경영과, 금융경영과	
3	복 지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Welfare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학점은행제)	
4	관 광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Tourism	항공관광과, 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일어과, 관광비 즈니스과(관광마케팅전공, 관광서비스전공), 호텔관광서비 스과	
5	디 자 인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Design	실내건축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6	예 술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Art	연기영상과, 공연연기과, 음악계열(유지컬전공, 실용음악전 공)	
7	체 육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Sports	생활체육계열(스포츠재활전공, 생활체육전공), 생활체육과	
8	간 호 전 문 학 사	Associate of Nursing	간호과(3년제)	
9	간 호 학 사	Bachelor of Nursing	간호학과	
10	치 위 생 전 문 학 사	Associate Degree of Dental Hygiene	치위생과	
11	행 정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Public Administration	비서행정과	
12	미 용 예 술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Beauty Art	뷰티코디네이션과	
13	아 동 보 육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동보육과, 아동·가족전공(학점은행제)	
14	식 품 조 리 전 문 학 사	Associate in Food Cooking	호텔조리·제빵계열(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호텔조 리제과제빵과(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호텔조리제과 제빵과, 글로벌한식조리과	
15	환 경 기 술 전 문 학 사	Associate of Scienc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Technology	공학기술인증학과(환경보건과)	
16	사 회 복 지 학 사	Bachelor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전공심화
17	전 기 공 학 사	Bachelor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과	전공심화
18	자 동 차 공 학 사	Bachelor of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공학과	전공심화
19	조 리 외 식 학 사	Bachelor of Culinary Arts	글로벌한식조리학과	전공심화
20	관 광 학 사	Bachelor of Tourism	항공관광학과	전공심화
21	실 내 건 축 디 자 인 학 사	Bachelor of Interior Design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공심화